

소년범죄인에 관한 법정진행과정의 보도의 허용여부

함고등법원 1985. 6. 3 판결

-3U13/85 사건-

적용법조

독일민법 제 823 조 및 제 847 조

판결요지

1. 소년범죄인에 관하여는, 그 행해진 범행이 중대하고 또한 전국적인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, 법정에서의 절차의 진행을 글이나 또는 사진으로써 이를 보도할 수 있다.
2. 위와 같은 관점하에서 허용되는 사진보도는, 그 사진이 형사변론의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고 또한 명시적인 촬영금지의 제한에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하여도,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.

사실개요

1963년 12월 14일생인 원고는 D지방법원의 제 3 형사부(소년부)의 변론에 기하여 강간치상,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의 혐의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 받고, 위 판결은 1984년 9월 1일에 확정되었다. 피고(1)이 출판하고 있는 전국적인 주간지인 「X」 잡지에서, 그 잡지의 편집인인 피고(2)는 위 소송절차에 관하여 원고의 성명과 함께 그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하였다. 지방법원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소에 관하여 6,000

마르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,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.

판결이유

원고의 성명을 게재하여 사진을 공표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, 독일민법 제 847 조에 기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그 자체로서는 하등의 중요한 인물이 아닌 원고는 그의 중대한 형사범행으로 인하여 일반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켰다. 또한 원고가 그 범행 당시에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, 그의 범행의 방법이라든가, 단기간 내에 흉악무도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, 원고의 성명권 및 초상권을 고려한다 할지라도, 일반의 알 권리가 원고의 인격권보다는 더욱 중요하게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.

원고의 범행 자체에 의하여 원고의 인격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일반대중은 원고로부터 재생의 가능성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어서는, 그 생생한 사실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환기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. 원고 스스로도, 피고측의 과장된 내용이나 부당한 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정의 공개된 변론에서 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던 것이었다.

위 사진들이 독일법원조직법 제 169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,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의 입수가 그 공표를 위법하게 만드는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. 왜냐하면 위 사진의 공표가 있을 후 즉, 원고가 장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, 이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, 따라서 독일민법 제 847 조에 기한 보상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.